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 의 자 : 노종면 · 박정현 · 윤준병
최혁진 · 황정아 · 김문수
김 현 · 윤종균 · 최민희
위성곤 · 채현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‘KC인증 제도(제품안전관리제도)’를 운영하고 있음.

이러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.

그러나 2023년 12월, 윤석열 정부는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.

윤석열 정부는 당시 인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, 이는 곧 KC 인증의 민영

화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, 제품 안전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철회됨.

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·제2항).

법률 제 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인이나 단체”를 “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인이나 단체”를 “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)	제4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)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 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<u>법인</u> <u>이나 단체</u> 중에서 안전인증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안 전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 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비영리 <u>법인이나 비영리단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<u>법인이나 단체</u> 는 안 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 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비영리법인이나 비영 <u>리단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